

제403회 국회
(임시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15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9)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2)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5)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0)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7)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6)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6)
1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7)

상정된 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9) 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2) 2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5) 2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7) 2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3) 2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0) 2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0) 2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7) 2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6) 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6) 2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6) 2
1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7) 2

(14시01분 개의)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제2차 국회선진화 소위에 이어서 국회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와 관련된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박장호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님,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실장님, 최상대 기재부2차관님,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님,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님, 김정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심사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9)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2)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5)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0)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7)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6)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6)
1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7)

(14시03분)

○소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목차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주요 심사 경과, 두 번째로는 의제를 좀 압축해서 결산심사와 관련된 사항, 세 번째 예산안 편성 시 정부와 국회의 자료 공유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심사 경과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저번에 한 차례의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그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3월 말까지 정부 다음 연도 재정규모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예결위가 재정총량을 심사하는 내용이 있고, 2페이지 보시면 4월 30일까지 기재부가 분야별 재원 배분방안을 예결위에 보고하는 방안,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내용, 그리고 예산의 심사방식을 현행 상임위 예비심사 다음 예결위 종합심사인데 이를 바꿔서 예결위 총량심사 후에 상임위 지출한도 내 심사 그리고 다시 예결위가 조정하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조기 결산과 관련해서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현행 5월 말에서 4월 말, 한 달 정도 또는 5월 15일까지 단축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정기회 개회 전에 심의기한을 마치도록 지금 현행은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앞에 결산보고서 제출이 당겨지다 보니까 6월 말 또는 7월 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결과에 예산안 편성 과정과 심사 과정을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 결산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의 구체적인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결산 시정요구를 미이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또는 주무부 장관 소명 등의 제재조치 등을 명시하는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처의 직무에 중복사업 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이 논의가 다뤄졌다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크게 결산심사와 예산안 편성 관련 내용은, 일단 두 번째 결산심사는 지금 공청회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심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결산 제출과 심의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결산을 5월 말까지 제출하고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안은 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을 5월 15일로 하되 그 심의기한을 6월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로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한 달 당겨 가지고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 당기는 것이고, 김진표 의장님 안은 제출기한을 5월 15일로 하고 결산 심의기한을 7월 15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에 대해서 최형두 위원님께서 결산심사를 지금 현재보다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결국 그 결산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심의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 임시회가 준비가 되면서 8월에 결산을 하다 보니 실제로 정기회까지 넘어가고 있고 최근 3년의 경우를 보면 국회에서 결산 의결일이 거의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등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예산안에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 지금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시기가 5월 말로 개정된 것은 지난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래로 한 15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의 여러 회계시스템이 발전·정착이 된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는 15일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결산 심의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에서 7월 국회로 좀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성준 의원님 안은 15일 단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15일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김진표 의장님 안은 정부가 5일, 감사원이 10일 단축하고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즉 조기 결산 제출 일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감사원 간의 협의가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제출일자 관련해서 내년도와 같이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국가결산보고서가 5월 15일 이후 이렇

게 제출이 될 경우에 임기만료 폐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진성준 의원님 안같이 현행 5월 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설령 결산 제출을 5월 중순 정도로 당긴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5년으로 한 2년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준비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산 제출이 당겨질 경우에, 결산 심의기한을 7월로 설정할 경우에 8월 임시회를 7월 임시회로 전환해서 국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2번, 결산 심사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진성준·양경숙·맹성규·김진표 의원님 안입니다.

이들 4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맹성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의 심사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허영 위원님께서 결산 심사결과가 예산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탄희 위원님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형두 위원님께서 결산 심사결과 시정조치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차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그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이미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정화의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정부가 결산 심사결과 예산안 편성 반영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고 수용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국회 차원에서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회법에 반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 내용 3번입니다.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윤영덕·배준영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정부는 12월 또는 다음 연도 1~2월에 1차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또 결산과 더불어서 5월 말에 2차로 후속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지금 정부의 조치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에 대한 시기를 현행 관례에 맞춰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만약에 정부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윤영덕 의원님은 또 1년의 범위를 뒤서 추가적인 보고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배준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이를 예산안에 조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의 소명을 요구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님께서서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행 1차·2차 그렇게 내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지금도 현행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리계획·결과 제출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결산이 도입될 경우에는 그 보고 시점이 1차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2차의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제출일과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영덕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또 2차로 최종 결과보고를 내다 보니까 이게 다음 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되는 시점과 중첩이 되는 문제가, 조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배준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시정요구 미조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회 예

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24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산요구서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맹성규·김진표 의원안입니다.

이들 2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일 전에, 사전에 예산요구서를 보고받은 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진표 의장님 안은 이에 더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도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각 부처가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에 대해서 맹성규 위원님께서서는 국회의 심사 시간과 전문성의 한계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장동혁 위원님께서서는 예산요구서의 사전 보고 시 상임위가 민원창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형두 위원님께서서는 사전 보고 및 심사가 헌법상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안 제출 이전에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 심사기간 및 정보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요구서에 상임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이와 같이 사전 보고를 받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편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 의견을 따를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는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김진표 의장님 안입니다.

김진표 의장님 안은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말까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영 위원님께서서는 예산안 제출 전 국회가 중기재정계획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서 국회의 심의·확정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대한 국회와의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예산편성권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동혁 위원님께서서는 정보 과다시 심의 지연 또는 부실 우려의 문제를, 최형두 위원님께서서는 역시 예산안 제출 전 사전 보고·심사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그리고 기재부는 재원배분의 경우 예산안 제출 이전에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제출 전 재원배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금 예산안편성지침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다른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국회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 시 각 분야별 재원배분에 지금 국회가 사실상 관여하고 있지 못하는데 개정안은 국회가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일종의 다음 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헌법상 예산편성권의 제한, 침해 소지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에 분야별 재원배분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뿐 국회가 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사전심사 내용은 두고 있지 않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금 현재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포함되어서 제출되고 있는데 가변적이라고 한다면 개정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안으로 수정해서 국회 제출 사항이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소위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먼저 기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소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오늘 출석해 주신 기재부부터 해서 감사원 또 국회사무처 순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먼저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일단 제가 오늘 오후에 또 기재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어서 그것 하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과정을 좀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절대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 단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개에 걸친 일선 관서, 세무서 130개에 달하는 기관에서 수입금 한국은행 등 납입, 정부구매카드 대금 지급, 여러 가지 관련된 일정 때문에 최소 20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납정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월 15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15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서 1월 20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출납정리기한이 되면 그 이후로 한 20일간 세입세출 마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선 관서, 중앙관서, 기재부 해서 수입징수실적 보고 및 오류 정정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말까지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기금의 외부 회계법인 감사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단축 여력이 없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차세대 디브레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2006년까지 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가 9월 3일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한 3개월 단축하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2011 회계연도부터는 현금예산에 의한 결산뿐만 아니고 발생주의를

중심으로 한 재무결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결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고서 작성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매년 재무결산 오류 지적이 발생되는,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산보고서 작성 일정을 더 단축할 경우에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든지, 물론 최대한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산보고서 자료의 정확성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하고 잠깐 비교해 보자면 12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니까 저희와 비슷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영국은 10개월, 일본은 8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 일정을 좀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결산에 시정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한 이행,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해서 보면 항상 이행률이 95% 이상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 규정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조치기한을 명문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일차적으로 1월 말 또는 2월 말에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하고 5월에 최종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정요구 조치를 위한 정부 내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주셔서 결산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이삼 개월 이내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2차 보고하는 날을 현재처럼 5월 말로 해 주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절차에서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제출하고 논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저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대신 저희 기재부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걸로 같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예.

○소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감사원의 김경호 사무차장님.

○감사원제1사무차장 김경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감사원에서는 결산검사 일정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계신 결산보고서 검사 일정을 단축하는 데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재부에서 제출해야 하는 결산검사보고서 제출일자가 단축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현재 40일밖에 부여되지 않은 검사 일정을 고려할 때 저희가 검사 일정 자체를 더 줄이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결산검사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부여돼 있는 40일의 기간도 사실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더 이상 저희가 검사를 하는 일정인 40일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칫 검사 일정을 40일보다 더 줄이는, 현재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흘 정도까지 이렇게 줄인다면 결산검사보고서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가장 큼니다. 현재로서도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줄었다가는 오히려 결산검사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를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기재부차관님하고 감사원의 사무차장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 기재부차관님께서 결산 자료 만드는 과정의 아주 디테일한, 과정 과정에 며칠 며칠 걸린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며칠 걸리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장호 입법차장님.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결산보고서 정부가 작성하는 기한이 있고 국회 쪽에서 이루어지는 기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 결산심사를 정기회 전에 마치도록 한 부분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회 쪽에서 당기는 기간이 있고 정부 쪽에서 당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당겨지는 것은 한 달 정도를 국회 쪽에서 당겨서 가장 늦은 시점이 7월 15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현행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더 당기는 건데, 정부 쪽 보시면 지금 진성준 의원안이나 김진표 의원안이나 공히 15일 정도 당기는 겁니다. 이것이 5월 31일 제출된 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에 처음 도입돼 가지고 15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결산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고 디지털회계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고 수석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이 15일 정도도 정부가 여력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이 있고, 주로 지금 당겨야 하는 부분은 국회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회법에 정기회 전에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한 제도 변화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결위나 본회의에서는 11월이나 12월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상임위를 보시면 주로 8월 달, 빠르면 7월 달에도 결산심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변화 그러니까 제도가 도입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는 결산심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 이걸 의무화하는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체를 다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정부가 있다면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다음 기한 관련해서는 일단 수석이 보고한 대로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는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수석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지금 현재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 딱 2개입니다. 예산안편성지침, 3월 말이나 4월 초에 기재부가 예결위에 보내는 거고요. 그야말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 지침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 30일 전에 지금 기재위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재원배분계획, 그것도 5년 치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지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기회가 시작되더라도 일단 법안 처리 먼저 하시지요, 그다음 국정감사 이루어지지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예산안에 착수하는 것이 빨라야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그다음에 예결위 또 자동부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부의가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기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서 정부가 예산편성할 때 큰 방향이 무엇이고 각 중앙부처가 뭘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신규사업이 뭘지를 파악하자는 정보공유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안 편성권에 정말 심각한 침해가 있다면 이것을 조금, 제가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조화될 수 있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여기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가 예산요구서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안에는 기재부에 각 중앙부처가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그것 반영을,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인데 그것이 사실상의 기속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면 그냥 제출하게끔, 동시에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게끔…… 그 제출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점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별 재원배분방안 그 부분은 지금 정부가 얘기한 바와 같이 가변성이 있습니다.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는 이번에 반영이 안 돼도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편성 단계에서 지금 국회가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돼 가지고 상반기부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폴로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로 유럽이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회와 정부 간에 당연히 지배 체제의 성격상 환류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원집정부제인 프랑스의 경우에 정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정부가 차년도의 예산배분 방향이나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또 의회가 그것을 받아서 질문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질문을 토대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조금 특이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제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예산 요구 리퀘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보냈을 때 의회가 기속은 안 되지만 이 편성 단계에서도 정부하고 의회,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상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상·하원의 위원회에서 예산 결의안이 작성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다는 점 꼭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님이 2시 반에 속개되는 기재위 소위 참석을 위해서 소위원장인 제가 이석을 허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기재부 담당은 누가 앉아 있어요?

○소위원장 전재수 저기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하고 재정관리국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결산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국장이 나와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총괄심의관이 나와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재정관리국장에 차관님의 답변만큼 그 무게를 그냥 실어 주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오늘 그러면 답변하시면 그게 기

재부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이석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부처의 입장 또 국회 입법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전향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선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자료 앞부분에 소개돼 있는 재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이게 하향식 재원배분 방식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 조직, 공공기관 조직,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 지원 편성을 필요로 하는 각종 단체의 요구, 그 창구가 어디가 돼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짚어 봐야 될 테고, 그러려면 어쨌든 공식적인 정부 조직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성안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예산의 초안이 마련된다고 봐야 될 텐데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의 총량을 결정하거나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재 이 시스템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돼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결산심사가 익년도 예산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총괄심의관이십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어느 분 답변하시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정희갑 재정관리국장 정희갑입니다.

○김상훈 위원 대체로 지적사항에 보면 결산의 결과 자체가 익년도 예산에 제대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 단축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 차관이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답변해 보실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 질문 취지를……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산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이 1200건입니다. 그 1200건 중에 저희가 예산안과 관련된 것을 따로 추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00건 자체가 다음 연도 예산안과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건 중에 300건 정도는 예산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류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들은.

○**김상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회가 결산 그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는 그 일정으로만 본다면 8월 결산심사하고 나서 9월 정기국회가 스타트가 되고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그다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11월쯤에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이 잡히고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결산의 결과를 반영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심사 시기가 단축돼야 된다는 그 입장은 존중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하에서도 익년도 예산의 결산심사의 결과가 피드백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감사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도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안을 낼 수 있는지도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특별하게 여기 나와 계신 기재부나 감사원, 정부기관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를 해 보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입법차장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예산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 상임위로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예결위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결위가 받아서 하게 되면 한 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산심사를 쭉 해 보면…… 결산을 왜 합니까? 그냥 정부 예산편성, 돈 쓴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 보자 하는 취지로 결산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면 결산에 대한 정보를 예산편성 과정에 전혀 넣을 수가 없어요. 분석 시간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아까 뒤에 답변을 주셨는데, 한 300개 정도는 환류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조차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정부를 옥죄다, 아니면 시간을 급하게 우리가, 국회가 권한을 더 갖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한정된 자원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가 부족하고 어디서 보완돼야 된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좀 부담이 되시면 개선안을 마련……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년 정도 개선안을 준비해 가지고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지 않거나 그리고 결산의 환류 기능이 거의 없는 지금과 같은 예산심사,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루이틀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더 전향된 자세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 예산심의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뭐지?’ 하다가 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특히 결산은 너무 황당한 게 예산편성, 예산 의결하기 전날 결산을 의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전향된 모습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예산정부안을 기재부에 제출할 때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상임위는 예산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형해화돼 있습니다. 상임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냥 넘어가서 예결위 가서 하는데 최소한 상임위에서도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결산하고 같이 엮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돼야 할 사업은 어떤지, 세세한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기한을 당기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힘들다’ 그리고 감사원의 사무차장님께서도 ‘기재부가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원은 40일 이상, 40일 정도 걸리는 것을 단축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자기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결산 과정이 사실은 예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결산 과정을 잘 치르면서 다음 연도,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거든요. 그 의도 외에는 없어요. 얼마큼 예산을 잘 썼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불용해서 쓸모없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훨씬 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지요.

아까 입법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앞당기겠다, 국회에서 일정 부분 확 당기겠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감사원에서는, 10일 정도 당겨주는 것을 요구한 건데 그것을 못 하신다고 아예 선을 긋고 가시면 이런 논의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5월 31일까지 중앙부처가 기재부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미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이라도, 15일까지만 내더라도 국회가 결산을 해 보고 오류가 난 것들 그리고 시정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이 부처에서 편성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예로 들면 연말에 예산 국회가 열렸을 때, 예산이 열렸을 때 지리하게 싸우잖아요. 정부하고 국회 그리고 여당·야당 간 싸우잖아요.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문

제가 됐던 시행령 통치 예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결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미리 예산편성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기초를 정할 수 있다면 연말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미리미리 조율해 가니까. 그리고 법적 시한을 놓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일을 당겨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 시정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정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것 반영합니까? 저는 잘 반영하는 것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권한이고,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 의무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권 침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숙고해서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여러 가지 결산·예산 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5일, 10일 또는 15일을 줄이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결산하고 예산하는 지금 이 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기재부가 정말 힘들게, 시스템상으로 10일, 15일 줄이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만큼을 줄여 주면 저희가 그 15일을 정말 알토란같이 사용해서 엄청나게 심도 깊은 결산·예산 심사를 할 것인지, 과연 우리가 지금 15일이 부족해서 아니면 20일이 부족해서 국회가 예산결산을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산도 상임위의 결산을 바탕으로 하고 예산도 상임위의 예산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는 결산에 대해서는 7월 말 정도, 8월 정도면 결산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 검토할 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결산에 대해서 그다음 예산 검토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산을 나중에 형식적으로 그냥 날짜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것뿐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도 부처를 상대로 질문을 하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에 집중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예산에 관한 질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꼭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심도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게 다른 어떠한 정쟁을 다 제쳐 두고라도 예산결산에, 정부가 15일을 당겨 주면 국회에서 그만큼 심도 있는 예산결산 결과를 내놓을 시스템과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최형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국회 21대 전반기에 2년 연속으로 예결위를 해 보고—당시 야당이었습니다—또 소위까지 해 보고 또 앞서 국회사무처에 국회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의장실에서 다 지켜봐 왔는데 지금 이것 법안을 내는 취지는 다 이해가 되고 좋은데 실제 운영을 보면 참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해 결산 언제 했습니까? 정부가 결산안을 내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결산안을 빨리 검토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 질의에 대비를 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감사도 청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여를 지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뭐 이래 가지고 사실은 8월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가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여야 간에 딱 철칙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지금 예산 관행을 보면 국회가 이것, 입법부가 일일이 예산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지방정부가 부처랑 상의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2, 3월 되면 세종시에 다 가서 부처랑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부처로부터 의원실이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도 지방정부랑 함께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 부처나 각 지방정부 또는 각 직능단체, 계층별로 요구한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예산으로 이미 심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모두 모아서 국회가 일일이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형식 요건 이상으로 오히려 지체시키는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는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꼭 정기국회 중에 해야 되느냐 이게 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한다고 한 달을 다 허비하고 나면 결산·예산 모멘텀이 다 망가집니다. 아니, 국회가 이렇게 힘이 세고 언제든지 국회에 장차관을 불러서 막 호통 칠 수도 있고 자료 요청하고 안 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다 모아서 9월, 10월 한 달에 다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예결산을 조금 더 튼튼히 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실제로 국회의 관행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국정감사를 그 시기에 특정해서…… 하자면 좀 앞당기든지 아니면 상시 국정감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 체제니까 언제든지 소위를 통해서 그것을 따져 묻고 미국식으로 청문회를 하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치밀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

법안의,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국회 운영 캘린더를 보면 마지막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막 예결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허둥지둥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때는 예산만 가지고 치밀하게 따질 수 있는 또 앞서 결산도 끝나고 앞서 국정감사도 끝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짧게 부처 감사를 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꾸 어떤 제도를, 미국 제도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게 분명하게 효율성에 있어서 딱 기준이 있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우선 관행을 좀 더 바꾸자, 결산을 빨리 마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 시즌에는 예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 해서 예컨대 국정감사를 그 전에 끝내도록 하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 최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 행태를 바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당연히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국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예결산을 할 수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것은 그것대로 병행을 해서 제가 개선안을 내면 되는데요.

그것에 못지않게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의 초점이 과연 국회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예산안이나 결산을 심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한 곳이라도 더 보듬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가 너무, 정보의 비대칭성이지요. 알 수 있는 게,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은 사전 보고도 좋고 개선안이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회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 행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하는 목적이 똑같은 실수를 아니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 행태, 국회의 운영 행태하고는 별개로 결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하고 결산의 환류 기능,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보완이 되어야 되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처럼 정부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은 아마 더 많이 갑갑한 것을 느낄 거예요. 이게 제가 정부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정부를 옥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 운영 행태도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맹 간사님……

○김상훈 위원 정부 자료는 5월 31일 날 도착했는데 정작 국회가 한 석 달 뒤에 심사를 하고 이

렇게 하니까……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확 바꿔 버리면 되지요.

○소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그것 잘해 보자고 당기는 거니까……

○최형두 위원 당 대표 눈치 보지 말고 상임위에서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너무 당 대표 중심이에요.

○맹성규 위원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한 가지 조금 보충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결산의 환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정기회 이전에 마치도록 하다 보니까 8월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8월 국회가 16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9월과 맞닿아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넘어가고 있고 정기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최근 3년간 제가 봐도 예결위가 의결을 하게 되는 게 11월, 12월에 가서 의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회 운영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의 기한을 정기회랑 맞붙여 놓고 어쨌든 정기회 이전에 끝내라는 현행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한 달만이라도 정부하고 국회가 한 15일 정도 십사일반으로 조금 당겨 줘서 7월 국회로만 가도 정기회하고의 어떤 간극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도 7월 중에, 6, 7월…… 하여튼 간에 7월 중에는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일정의 성립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7월 정도는 해 봐야 7월에 좀 뭔가 심의가, 사실상 저희가 결산 결과가 완료됐을 때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재부가 8월 그다음에 9월 달에 그다음 연도 이렇게 국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현행 시스템은 예산안 편성 쪽에는 도저히 반영시킬 수 없는 좀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조금 7월 이런 식으로 인식을, 국회의 행태를 바꿔서 7월로 딱 끊어서 정기회 이전에 결산을 한다는 인식과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정기회 나름대로 더 내실 있게 서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이,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아까 말씀하신 전반

적으로 있는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부하고 감사원 한 15일 정도 단축 부분을 사실 저희가 더 내밀하게 볼 경우에,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행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끝에 자기들 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정부에 보내서, 보내는 게 5월 20일 날 보내고 5월 31일까지 내는데, 그러면 사실은 끝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라고 하면 조금의 뭔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일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 달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검사나 어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단축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15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 수준 또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고 정부가 정리해서 국회에 내는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갈 경우에 한 15일은 정부가 좀 노력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이에 맞춰서 국회가 한 15일만 당겨 주면, 7월로만 결산이 가는 국회의 전반적인 일정이 딱 확고하게 서진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정기회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커다란, 조그맣지만 커다란 변화를 줄 수……

○김상훈 위원 여야 협의해서 7월 임시회에 하자 그러면 되지요.

○맹성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소위원장 전재수 수석님 말씀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 붙여서 국회의 운영도 바뀔 수 있는, 아까 회의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현행의 국회 운영의 부분도 조금 일정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요구서 같은 경우, 각 부처가 내는 예산요구서는 지금 현행법에는 없지만 현행도 기재부에 내고 각 상임위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고 있는데, 다만 법에 내라는 어떤 명문의 규정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행도 상임위가 예산요구서를 받고 있는 현행의 관례를 보면 이걸 기재부에 내면서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같이 제출 정도, 그러니까

보고의 의미를 떠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내가 쫓는지 그걸 갖다가 제출하는 정도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7월 달까지만 되면 최소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부도 결산에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100% 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발견하면 그때는 다 편성해 가지고 아귀가 다 맞는 상태라 그때는 문제 제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소위 한 번 들어가고 간사까지 두 번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 주면, 여기서 예산편성권을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올 때 최소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결산에 관한 의견은 반영해 갖고 오면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갈등도 줄어들고 쟁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어떤 저의가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요.

○문정복 위원 편성권 침해라고 보면 안 되지.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산요구서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낸다, 요새 지금의 경우에는 예산요구서를 낸다기보다는 각 상임위가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각 조사관이나 그쪽에서 기재부에 낸 요구서를 달라고 하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공유 차원에서 낸 것을 같이 내면서 내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제출해서 보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김상훈 위원 하여튼 법제화하는 건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 보고, 임시회야 우리가 결산을 좀 7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사실은.

○문정복 위원 없지요.

○맹성규 위원 아니, 그 자료가……

○김상훈 위원 부처 보고 자료를 일찍 내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5월 말에 이미 도착해 있는 자료 가지고 결산을 우리가 당겨서 하면 되는 거지.

○문정복 위원 차장님이 뭐 말씀하실 것 있는 것 같아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아까 수석전문위원 얘기 중에 일부분 반영은 되어 있고 한테요,

지금 김상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회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7월 달까지 결산 마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가능하신데……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국회가 할 것, 정부가 좀 협조해 줄 것 이걸 구분하면 돼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다만 현행대로 5월 말까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6월, 7월…… 아마 7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그러니까 그나마 좀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정부도 좀 일정 부분, 아까 얘기했던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좀 축소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기재부에…… 우리가 왜 구청도 보면, 일선 행정기관인 구청·동사무소도 가면 요즘 행정절차 간소화 이런 것 많이 하던데 이거 행정절차 간소화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한 보름 정도 안 됩니까,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정희갑** 재정관리국장 정희갑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된 게 그다음 해 5월 30일 날 내다 보니까 한 해 마무리된 것이 어떻게 5월이나 걸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5월이라는 기간을 한 기관이 독점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나 경찰서 같은 일선 현업 기관에서 처음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모아져서 또 중앙관서에 오고 중앙관서에 모아진 것이 기재부에 오고 기재부에서 모아진 것이 또 감사원에 가서 결산 검사를 받고 하는 것처럼 그 5개월이라는 기간이 각 기관별로……

○**소위원장 전재수** 그 디테일한 과정을 소요되는 시간별로 해서 며칠 걸리는지 그걸 하나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맹성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위원장 전재수** 사실은 오늘 12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데, 국가재정법하고 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인데 그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논의를 하면 여야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고 뭔가 공통분모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만 추려 가지고 오늘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공통분모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상훈 위원님께서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상훈 위원** 아니, 우선 우리도 당 지도부도 상의해야 되……

○**소위원장 전재수** 이거 뭐 지도부까지 이야기를……

○**김상훈 위원** 정부 쪽에 구태여 제출 시한 부분에서 부담 줄 필요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국회에서 결산 심사하는 거야 왜 못 당기겠어요. 다만 그 과정에 어쨌든 또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좀 있고 하니 그것 들어 보고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을 망치 두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맹성규 위원** 예,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논의의 핵심은…… 아니, 기간을 당기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5월 31일 날 국회에 제출한 그 안이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 결과를 반영해 갖고 와야 된다는 건데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기재부가 하기가 싫은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오면 된다는 거야. 그걸 기간을 당기든 기재부가 하여간 책임지고 반영을 시키든……

○**이양수 위원** 그러면 15일 당기면 돼요? 15일 당기면……

○**맹성규 위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15일 당겨서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돼요?

○**맹성규 위원** 그 예산안 편성이 9월 초에 오니까 한 달 정도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7월 말에 결산을 끝내 주면 8월 말인 한 달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거지요.

○**이양수 위원** 내 얘기는, 결산은 5월 31일 날 오잖아요?

○**맹성규 위원** 예.

○**이양수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6월, 7월에 결산할 수 있잖아요?

○**문정복 위원** 그렇지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정부가 그대로 지금처럼 5월에 제출을 해도 국회에서 빨리만 하면 7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기재부가 반영할 수 있잖아요.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 주면 돼요.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더러 빨리 제출해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국회에서 6·7월에 끝내면 된다 이거지, 국회가.

○**문정복 위원** 아니, 보름 정도……

○**맹성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양수 위원** 정부가 어렵다는데 왜 자꾸 그걸 당기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그냥 서둘러서 두 달 동안 하면 되지.

○**맹성규 위원**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확정되는 게 11월, 12월입니다. 원래 결산의 심사 결과가 차년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 구조상 그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물론 얘기는 사실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결산 국회 제출 기한도 당기자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결산심사를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예산편성 과정에 그 심사 결과가 환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상훈 위원** 차장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걸 그렇지 않지요. 5월 31일 날 자료가 제출되면 우리가 여야 합의로 7월 임시회에서 결산 심사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결산심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이걸 끼워서 와라’ 이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 해에 있는, 예를 들면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달에 상임위 예산심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문정복 위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맹성규 위원**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이양수 위원** 휴가를 8월 달에 가요, 7월에 가지 말고. 그러면 돼.

○**김상훈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할 때 이걸 다 보잖아요. 보는데, 그것을 사실은 장동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중간에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결산심사 결과를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예산심사 할 때 충분히 결산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어느 정도 예산심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맹성규 위원** 위원님, 그게 어려운 게요……

○**김상훈 위원** 그걸 반드시 예산편성 시에 끼워서 와야 된다고 전제를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문정복 위원** 아니, 우리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 것들이 예산편성안에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안에 안 맞춰 갖고 온다고요.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문정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것을, 예산을 끼워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예결위의……

○**김상훈 위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문정복 위원** 아니, 예결위의 특수성을 볼 때 나중에 가면 전체 50인은 아무 소용 없어요. 소위, 소소위, 나중에 가면 원내대표 둘이서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산한 것, 예산 심사한 것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서 올 때 우리가 시정 조치한 결산심사서를 보내면 정부가 그것을 보고 좀 편성할 건 편성해 오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양수 위원** 예, 좋은 얘데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일선 기관, 관청부터 쪽 오는 것이 5월 31일밖에는 어려우니 우리가 7월 달 중으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5월 말까지 제출되면 6월 달에 사무처나 이런 데서 각 분석하고 7월 달에 국회 열어서 결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월 한 20일쯤에 정부에다 보내면 8월에 반영해 갖고 9월에 우리한테 넘어올 때 반영시켜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회가 7월 달에 휴가 안 가고 8월 달에 휴가 가면 이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는 거지. 같은 효과가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것이 보름 빨라진다고 해서 나중에 소소위 없어지고 원내대표 둘이서 막 하고 이거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맹성규 위원** 정부도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예산안이 확정돼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산의 의견이 들어가서 바꾸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좀 강제화해서 그 의견을 반영시켜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양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국회가 지금 현행대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걸 왜 당기자고 하느냐? 실효성을 좀 더 높여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15일 정도를 당겨 주면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거 심의해서 정부로 보내서 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여 보자는 거지. 지금 얘기대로 해서 우리가 7월 말에 딱 끝내 가지고 보내서 정부가 그것을 완전하게 100% 반영시켜 주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보름을 당겨 주면 지금 얘기했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도 예산안이 온 다음에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정부는 얼마 정도까지 당길 수 있어요, 최대한 당긴다면?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정희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현재보다 더 당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위원장 전재수 하루도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정희갑 특히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구정이 1월 달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2월 10일 날 총세입·세출을 마감하는데 결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어디까지 당길 수 있는지 하여튼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고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예산요구서는 지금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결위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기회를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예.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그러니까 기존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했던 것을 명문화하는 거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겠지만 이게 이렇게 큰 체계 내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제적인 체계로 봤을 때는 제헌국회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편성을 하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맞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국가는 이런 기본적인 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상적으로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그다음에 심의·확정권을 발동을 해서 한나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해석인데요.

예산요구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조정하다 보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야, 정부 의사 결정이 바뀐 거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분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서로 오고 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체계를 뒤흔드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아니, 심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에 무슨…… 국회가 정부의 제출한 의견을 따라야 된다가나 시정을 해야 된다가나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정복 위원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그것을 이제 국회가 의견을 내지 않고 제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국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역할 분담에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순간 이게 또 다른 형식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맹성규 위원 아니, 임 국장님……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이해관계자들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도……

○맹성규 위원 임 국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가 기재부를 주고 국회에 줬어.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재부장관이 할 일이 없어지시는 거야. 기재부장관이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또 바뀌 가지고 전체 정부 의견으로 변형된 안이 올라오면 그러면 감 놔라 콩 놔라, 너희 왜 바뀌었냐고 이렇게 하니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회가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뭐냐, 어떤 제안을 하나면 전혀 모른다는 거야. 정부가,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는 어떤 진행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님 안도 그렇고 다른 안들도 그러면 최소한 알 수 있는……

지금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걱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 전체적인 안으로 변형된 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지 제안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그것을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제안하고 관련해서는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정한 취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문정복 위원 개헌해야 쓰겠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결산하고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결산하고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정처나 예결위 사무처, 각 상임위 사무처에서 연중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예산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누적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 정부 내부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맹성규 위원 임 국장! 임 국장!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그것은 그다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맹성규 위원 임 국장! 지금 오버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입장을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오히려 국회에…… 지금 임 국장께서는 국회를, 오히려 오버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국회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려고,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각 부처가 기재부로 제출한 안이 기재부를 통해서 나중에 나올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안하고 나중의 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처음에 제출할 수 없다, 좋아.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기재부를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알아서, 능력 있는데 상임위에서 알아서 자료를 받아 오라.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각 부처가 기재부에 낸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화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김상훈 위원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서 임시회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무원 생활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쪽의 예산 시기 조정이라든지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일파만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기재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정부, 각 부처 또 거기에 딸린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받고 싶어하는 각종 단체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쪽의 무슨 제출 시기 이런 조정 없이도 국회에서만 협의하면, 우리가 결산심사를 좀 앞당겨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정부 쪽 의견을 들어 보고 그 해에 있을 익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또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맹성규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어야 되냐면, 그렇게 하시려면 국회도 당연히 이제 해 가지고 좋아,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국회가 7월 달에 예산을 넘겼는데 정부가 예산안에 수정안을 반영시켜 오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제재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기재부가, 압박하는 수단이지.

○이양수 위원 제출할 때?

○맹성규 위원 그렇지.

만일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일정도 당기기 어렵고 막 그렇다면 우리가 7월 임시국회를 해 가지고 말에 정부에 국회 예산을 넘기면 정부가 최소한 그것은 반영시켜 오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문정복 위원 시정요구 의무화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지금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통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면?

○맹성규 위원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환류기능을 높여 보자’ 이런 취지예요, 강화하자는 게 아니고.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강화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하면.

○맹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른데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압박하려고……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좀 하려면…… 차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말씀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말씀하세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장호 죄송합니다.

저도 첫 회의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재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에 편성권, 심의·확정권 이게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면 심의·확정권이 지금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 지금 증액 동의나 비목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본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할 때, 의결할 때 그때 나와서 하면 됩니다, 엄격하게 그게 구분되는 절차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임위 예비 검토나 우리 예결위 때 정부가 계속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편성 과정에 국회 쪽에 그 정도 통로가 없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원님들도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 또 방향 이런 것을 그래도 숙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 부분에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전재수 이 정도는 이견 없이 공통분모로 해 가지고 오늘 결론을 끌어낼 줄 알았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고 또 기재부……

○맹성규 위원 나는 내가 제출한 건 하나도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쟁점 사항

으로 다 뺐네?

○이양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랬어.

○김상훈 위원 우리가 좀 더 상의해 볼게요.

○소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합시다.

기재부도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우리 국회도 또 다른 의견이 있고 감사원도 또 각자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자료 정리도 해 주시고 오늘 나온 의견들 좀 취합을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모아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상 훈	맹 성 규	문 정 복	이 양 수
이 탄 희	장 동 혁	전 재 수	최 형 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박 태 형
입 법 심 의 관	이 현 정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박 장 호
국 회 예 산 정 책 처	최 병 권
예 산 분 석 실 장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2 차 관	최 상 대
예산총괄심의관	임 기 근
재 정 관 리 국 장	정 희 갑
감사원제1사무차장	김 경 호